
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6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3월 13일

발 의 자: 서울특별시의회 의장

1. 제안이유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3항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 (2023.02.14.)한 주민조례청구(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)를 발의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